

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 審 査 報 告 書

2006. 11. 1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10월 26일 · 종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30일
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6. 11. 1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김 광 우)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【매 입】

-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의거 동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.

○ 변경내용 : 공유재산 취득(매입) 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^2 , 천원)

재산의 표시				취득 면적	감정가액	취득 시기	취득(매입) 사유	취득 소재지	재산 명칭
번호	지목	소재지	면적						
계			828.45	828.45	2,021,000				
1	대 전 전	평창동 186-9 평창동 186-3 평창동 187-6	828.45	828.45	2,021,000	2006.11 예정	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의거 동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고 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.	종로구 종로구 현윤역	

다. 관계법규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
(공유재산의 관리계획, 회계간의 재산어관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
(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)

-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(공유재산관리계획)
- 주차장법 제22조 (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- 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- 5. 討 論 要 旨 : 없 음
- 6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- 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- 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